



제1607호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8 9 0 호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	
○ 공	고 제 8 9 3 호	버스탑재형 이동식 단속시스템(CCTV) 불법주정차단속 운영 공고	28	
○ 공	고 제 9 1 2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31	
○ 공	고 제 9 2 1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의 밤샘주차)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5	
○ 공	고 제 9 3 3 호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37	
○ 공	고 제 9 3 5 호	2021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안내문 공고	38	
○ 보 건 소 공 고 제	3 8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40	
	보 건 소 공 고 제	4 0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42

고 시

○ 고	시 제 6 4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변경 고시	43
○ 고	시 제 7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45
○ 고	시 제 7 5 호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49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890호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해체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건축과
- 연락처 : ☎ 032-453-8420 FAX 453-276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제정조례안 : 별첨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해체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관계법령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折)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 건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자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관리자와의 계약을 1개월 이상 지연시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건축주가 직접 해체공사감리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결과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저하되어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

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2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를 명한 경우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할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해체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해체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해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해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해체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 가.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
 - 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여부
 - 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

- 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3. 외관조사 결과 분석, 재료 시험·측정 결과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4. 건축물의 상태평가 결과
 5. 건축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평가 결과
 6.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7. 보수·보강방법
 8. 종합결론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④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자에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으로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빈 건축물(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사유 및 해체 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에 따라 해체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상비로 지급해야 한다.

③ 빈 건축물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 해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날 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예산·인력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전문개정 2011. 5. 24.]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0.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8. 5.,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2016. 6. 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0. 14.>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2-22>

④ 제6조제4항·제7조·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893호

버스타재형 이동식 단속시스템(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공고

인천광역시는 버스타재형 이동식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2020.11.05.)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남동구 버스 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취지 및 내용을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1. 관련근거

- 가.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6조 [단속대상 및 견인]
- 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 제1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과태료]

2. 설치목적

- 가. 버스전용차로 내 주·정차 위반 단속
- 나. 노선버스의 정시성 및 승객의 안전성 확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3. 주요내용

가. 단속기간 : 2021.5.17.(월)부터 단속 실시

- 2021.5.17.(월) ~ 6.30.(수) : 계도 단속 실시
- 2021.7.1.(목)부터 : 과태료부과 단속 실시

나. 단속시간 : 07:00 ~ 21: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남동구)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 09:00 ~ 17:00, 20:00 ~ 21:00
※점심시간 12:00 ~ 14:00 단속유예

(인천광역시)버스전용차로 위반 : 07:00 ~ 09:00, 17:00 ~ 20:00
※2021.4.1.부터 실시

다. 단속대상

- 남동구 주·정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내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 인천광역시버스전용차로 위반 :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한 차량

라. 단속방법 : 단속카메라 장착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즉시 단속, 주·정차 위반차량은 두 대의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경우 단속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4. 27. ~ 2021. 5. 17. (21일간)

5. 공고방법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5. 17(월)까지

나. 제출내용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 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②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타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453-2899), 직접방문

라.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마.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행정과(☎032-453-5193)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 의견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공고 제2021-912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4.26. ~ 2021.5.10.**
3. 공고대상 : **이륜차 8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117	 2021년 3월 22일 목요일 16:13:40 104917 만수6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3.22. ○ 견인일 : 2021.4.20. 이후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22 에코프라자 지하1층 주차장
	2021-00125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10:16:09 104917 만수6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3.25. ○ 견인일 : 2021.4.20. 이후 ○ 보관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109동 옆 재활용장
	2021-00126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09:10:06 7122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3.26. ○ 견인일 : 2021.4.22.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 남동구 간석로15번길 21
	2021-00127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09:42:05 41 논현1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3.26. ○ 견인일 : 2021.4.22.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 남동구 장도로37 장어이야기 옆쪽
	2021-00127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09:42:05 41 논현1동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3.26. ○ 견인일 : 2021.4.22.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 남동구 장도로37 장어이야기 옆쪽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1-0014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1.3.31. ○ 견인일 : 2021.4.22. 이후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천 남동구 용천로 4번길 1 우측편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주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21-00117	번호판없음(2대)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22 에코프라자 지하1층 주차장	2021.4.20. 이후	(주)서울폐차사업소	
2	2021-00125	번호판미상(2대)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매소홀로 1030 109동 옆 재활용장	2021.4.20. 이후	(주)서울폐차사업소	
3	2021-0012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로15번길 21	2021.4.22.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1-00127	번호판미상(2대)	이륜차, 삼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상도로37 장어이야기 옆쪽	2021.4.22.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5	2021-0014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용천로 4번길 1 우측편	2021.4.22.이후	(주)인천폐차사업소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9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28. ~ 2021. 5. 12.(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박*현	인천84바**94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손*일	인천80사**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리미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장*철	인천81바**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조*희	인천99아**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70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식	인천84바**99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근	인천99아**87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라*민	인천85아**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4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93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으로부터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 ☐ 사 업 명 :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
- ☐ 열람기간 : 2021.4.29. ~ 2021.5.13.(14일)
-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032-453-6293
- ☐ 의견제출기간 : 2021.4.29. ~ 2021.5.13.(열람기간 내)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59-3번지 외 13필지(3,965.91㎡)
 - 토지소유자 : 김○남(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외 16명
-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60-12번지 외 수목 등 총 322건
-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935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안내문 공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하여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2. 지급금액 : 연간 600,000원 이내
3. 신청자격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제외대상 : 도시가구당 월평균소득 4,889,781원 이상인 세대 등
 - 세대주(세대원)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원항목 : 지원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납입 영수증(2021년도분)을 신청시 첨부 제출
5.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심사 → 결정 및 개별 통보
6. 신청접수 등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4. 29. ~ 2021. 5. 13.
 - * 지급 예정 : 2021. 7월 이후
 - 접수 및 문의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그린벨트팀), Tel 453-2970, Fax 453-2959
 - 신청시 제출서류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 소득·재산신고서 1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별지 제1호의2]
 -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정보 제공 동의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별지 제1호의3]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 1부(세대원 중 건강보험 별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납입증명 서류 제출)

- 생활형편 증명서류(소득입증서류 목록) 1부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38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의거 직권말소 처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일자: 2021. 04. 26.
3. 처분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4. 공 고 기 간: 2021.04.26. ~ 2021.05.11.(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0202149	네츄럴웨이브	방O영	논고개로 61, 라피에스타 2층 214호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2.28.	2021.04.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0202161	만수야점핑하자	고O곤	만수로 21, 2층 일부호 (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4.22.	2021.04.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0202413	빛나점핑클럽	김O순	주안로 234, 2층 207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1.17.	2021.04.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0202445	워니마켓	임O원	구월로46번길 30, 402호 (간석동, 대림맨션)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1.20.	2021.04.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0203033	이지스킨 &다이어트	임O영	만수서로105번길 40-24, 만수주공11단지 상가 지하1층 비02호(만수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2.4.	2021.04.26.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9-0203470	네이처스토리	박O숙	남동대로916번길 6, 8층 806호 (간석동, 스카이다운)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6.22.	2021.04.26.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1년 4월 26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40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2021.04.27.
3. 처분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2021.04.28. ~ 2021.05.12.(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일)
일반음식점	2010 -0199744	청해활어회 수산	김*향	인천 남동구 석정로 577, 1층 일부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12.31.	2021.04.27.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1년 4월 28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64호

지적기준점(도근점) 변경 고시

관내 설치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세계측지좌표		중부좌표		가리좌표	
	X(m)	Y(m)	X(m)	Y(m)	X(m)	Y(m)
		불			임	
기 준 원 점 명	세계좌표, 중부좌표					
설 치 일 자	불임					
소 재 지	불임					
표 지 재 질	불임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기준점명 변경(4점)					

불 임 지적기준점(도근점) 변경 목록 1부.

지적 기준점 변경 목록

연번	구분	기준점명	세계 X	Y	중부 X	Y	가리 X	Y	소재지	설치일(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1	지적도근점	8289	539704.08	175338.55	439398.03	175268.22			구월동 343-6	2021-02-08	철제	8220
2	지적도근점	8290	539746.32	175335.82	439440.27	175265.49			구월동 342-75	2021-02-08	철제	8221
3	지적도근점	8291	539752.88	175256.43	439446.83	175186.10			구월동 341-11	2021-02-08	철제	8222
4	지적도근점	8292	539714.46	175251.38	439408.41	175181.05			구월동 341-11	2021-02-08	철제	8223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7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539 (운연동) 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84 (구월동)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3-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539 (운연동)	2009.07.10.	수원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21.4.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인로 353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539를 건물번호로 부여	트인건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91-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6번길 25-8 (만수동)	2009.11.16.	구월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4.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말로86번길 25-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5-8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51-2, 35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124번길 62-18 (남촌동)	2009.11.16.	남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4.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촌로124번길 62-1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2-18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55번길 13-17 (논현동)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4.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255번길 13-1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3-17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55, 15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29번길 7 (수산동)	2011.03.24.	찬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4.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찬우물로29번길 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48번길 94 (고잔동)	2009.11.16.	청능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4.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청능대로448번길 9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4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84 (구월동)	2021.4.2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 13-2 (간석동)	2021.4.2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6번길 25-6 (만수동)	2021.4.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92번길 26 (만수동)	2021.4.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80-16 (고잔동)	2021.4.2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두진화학(주)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17 (간석동)	2021.4.2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3번길 14 (간석동)	2021.4.2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80번길 27 (간석동)	2021.4.2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80번길 27-1 (간석동)	2021.4.2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48번길 92 (고잔동)	2021.4.28.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75호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소규모·영세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1. 8. 31.	2021.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착한임대인	매출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연장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1)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남동구청 세입징수과(☎032-453-2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